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에 대한 이해

→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듯이 퇴직연금에서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수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부과하는지,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 등 퇴직연금 수수료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짚어 보고 아울러 수수료가 적립금 축적을 저해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자산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진섭 선임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js@truefriend.com

사업자 수수료 관련 사항,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IRP의 경우 개인)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을 위탁한다.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또는 가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동 수수료는 사업자 업무에 대응하여 각각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며 그 수준 및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계약서(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다.¹⁾

동 수수료는 상시 발생하는 수수료인 반면, 이와는 달리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로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있다.²⁾ 중도해지수수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계약이전수수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다.³⁾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에 관한 내용 역시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본고에서는 사업자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루지 않음.

2)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도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의 일종이지만, 본고에서는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함.

3)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수수료로 가입자 교육수수료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보험계약에만 있는 '상품관리수수료'

보험회사 중에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외에 '상품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품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자산관리수수료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상품관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보험회사는 타 보험회사에 비해 자산관리수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산관리수수료 없이 운용관리수수료와 상품관리수수료만 부과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결국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상품관리수수료'가 사실상 그 외 사업자(은행, 증권사)의 자산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상품관리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를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및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에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보험회사는 상품 유형에 따라 상품관리수수료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품관리수수료를 두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 중에는 자산관리수수료 수준을 보험상품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⁴⁾

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수수료 항목,
상품관리수수료

DB/DC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과 방식

그렇다면 사업자(DB/DC)는 어떤 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언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일까? 우선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외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과 기준부터 살펴보자. **수수료 부과 기준은 각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 단위)의 적립금 평가액의 평균 잔액(평잔)을 기준으로 소정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적립금 평잔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현상 '1년 동안의 적립금 평가액 평잔'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가령, 일(日)별 적립금 평가액을 합산하여 평잔을 계산하는 사업자도 있고, 평잔 계산에 있어 월(月)의 특정일을 설정하여 월별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사업자도 있다. 또한 같은 '적립금 평가액 평잔'을 부과 기준으로 삼더라도 해당 평잔에 대응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일의 적립금 평가액에 대응하는 수수료율을 평잔에 곱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잔 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정해 놓고 평잔 구간별로 대응하는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체차 적용)⁵⁾하는 경우도 있고, 평잔이

4) 이하에서는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리수수료 및 상품관리수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

5) 예를 들어 적립금 평잔 3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3%의 수수료율,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할 때, 적립금 평잔 45억 원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30\text{억 원} \times 0.3\% + (45\text{억 원} - 30\text{억 원}) \times 0.2\% = 1\text{천 } 2\text{백만 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함.

속하는 구간의 수수료율(정률)만을 곱하여 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日)별 적립금 평가액 또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적립금 평가액 평잔’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적립금 평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年)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1회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한편 소수에 불과하지만 ‘적립금’이 아닌 ‘부담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다. 다시 말해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적립금’ 및 ‘부담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약의 주체인 사용자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 부담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표1 DB/DC 수수료 부과 방식 예시

DB/DC 수수료 부과 방식 예시

1.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금번 계산기준일 직전 1년간)의 적립금 평가액 평잔(일(日)별 평가액들의 평균^(**) or 매월 계약해당일의 평가액들의 평균^(***)) × 해당 평잔에 대응하는 수수료율(체차 적용 또는 해당 평잔 구간의 단일 수수료율 적용) ⇔ 매년 계약해당일(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징구
2.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금번 계산기준일 직전 1년간)의 적립금 평가액 평잔 ×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의 적립금 평가액에 대응하는 수수료율(해당 평가액 구간의 단일 수수료율 적용) ⇔ 매년 계약해당일(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징구
3. 일(日)별 적립금 평가액 × 해당 평가액에 대응하는 수수료율(체차 적용 또는 해당 평가액 구간의 단일 수수료율 적용) ⇔ 일(日)별 수수료를 연(年) 단위(금번 계산기준일 직전 1년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징구(DC의 경우 매 부담금 납입 시마다 별도 징구하는 경우도 있음)
4. 매월 계약해당일의 적립금 평가액 × 해당 평가액에 대응하는 수수료율(단일 수수료율 적용) ⇔ 매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징구
5. 납입 부담금(누적) × 해당 부담금에 대응하는 수수료율(체차 적용 또는 해당 부담금액 구간의 단일 수수료율 적용) ⇔ 매 부담금 납입 시 별도 징구

(*)수수료 계산기준일: 최초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직전 1년간 일(日) 적립금 평잔 = 직전 1년간 매일의 적립금 평가액을 합한 금액/365 or 366

(***)직전 1년간 월(月) 적립금 평잔= 직전 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의 적립금 평가액을 합한 금액/12

자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수수료 계산기준일은 계약서에 ‘매년 계약해당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수료율 및 징구 시점도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 부과 방식은 (표1)의 1, 2, 3번 형태로서 매년 1회 징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매년 계약해당일에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징구 형태

계약을 해지(계약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경과 기간(계약해지일 전일까지 또는 계약해지 신청일까지)에 대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계약해지일(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징구한다. 만약 수수료 선취 방식 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계약해지일 또는 계약해지 신청일로부터 다음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취한 수수료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납입 부담금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선취/후취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별도로 정산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해지 시,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후취 또는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선취 수수료 반환

DB/DC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부과 방식

이제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역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의 일종이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동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중도해지/계약이전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는 페널티(penalty) 성격의 수수료다.⁶⁾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계약의 조기 해지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

사업자는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를 정률 또는 정액으로 부과하는데, 정률로 부과하는 경우 특정일(중도해지/계약이전일 전일, 중도해지/계약이전 신청일(또는 전일/익일)) 기준 적립금 평가액에 일정 수수료율(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도해지/계약이전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별도로 징구한다(계약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사업자에 따라 적립금 규모에 따라(또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⁷⁾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부과 방식: 정률 또는 정액 부과

6) 2012년 7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중 적어도 하나는 이미 폐지한 상태다.

7) 정액 수수료 부과 실례: ①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수수료 15,000원(DC의 경우 가입자 1인 기준)

② 중도해지/계약이전 대상 적립금 1억 원 미만: 수수료 15,000원(DC의 경우 가입자 1인 기준), 1억 원 이상: 수수료 100,000원(DC의 경우 가입자 1인 기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사업장이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3)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사업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사용자의 자발적 동기가 아닌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징구 방법: 현금성 자산에서 우선 취득, 부족할 경우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

수수료 징구 방법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로 징구하기도 하고 적립금에서 취득하기도 한다. 수수료를 별도로 징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현금성 자산에서 취득하고 부족할 경우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한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 매각 순서에 따르되, 사전에 정해진 바가 없을 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자산 매각 운용지시에 따른다. 만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 매각 순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수수료를 징구한다.

IRP 수수료, 적립금 규모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를 적용

IRP 수수료 부과 방식⁸⁾

IRP 수수료 부과 방식은 DB/DC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적립금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수수료율(정률)을 적용한다는 점과 ‘연금지급 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는 매 연금지급일(또는 연금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점이다.

표2 IRP 수수료 부과 기준 예시

〈적립 기간⁹⁾〉

1.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금번 계산기준일 직전 1년간)의 적립금 평가액 평잔(일(日)별 평가액들의 평균 or 매월 계약해당일의 평가액들의 평균) × 일정 수수료율(정률) \times 매년 계약해당일(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8) 개인형 IRP를 의미함(기업형 IRP가 아닌).

9) 적립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초 연금지급일(또는 연금지급 신청일) 전일까지의 기간. 단, 연금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

2. 일(日)별 적립금 평가액 × 일정 수수료율(정률) ≒ 일(日)별 수수료를 연(年) 단위(금번 계산기준일 직전 1년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3. 납입 부담금 × 일정 수수료율(정률) ≒ 매 부담금 납입 시 징구(부담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징구)

〈연금지급 기간〉¹⁰⁾

1. 연금지급일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평가액 평잔(일(日)별 평가액들의 평균) × 일정 수수료율(정률) ≒ 매 연금지급일(또는 연금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2. 연금지급일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日)별 적립금 평가액 × 일정 수수료율(정률) ≒ 일(日)별 수수료를 연금지급 주기 단위로 합산하여 매 연금지급일(또는 연금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최초 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최초 연금지급일 전일까지의 수수료를 최초 연금지급일(또는 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
자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IRP 계약을 해지(또는 이전)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중도인출 포함)에는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경과 기간(계약해지일/지급일 전일까지 또는 계약해지 신청일/일시금 신청일 전일까지)에 대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계약해지일(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한편 납입 부담금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선취/후취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별도로 정산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 징구 방법은 DB/DC와 동일하며 IRP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역시 DB/DC와 마찬가지로 정률 또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1)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사업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5세 이상인 IRP 가입자가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10) 연금지급 기간: 최초 연금지급일(또는 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최종 연금지급일 또는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 단, 최초 계약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2012년 7월 26일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자 부담

IRP 가입자, 수수료 수준에 주목해야

2012년 7월 26일부터 DB/DC/기업형 IRP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DC/기업형 IRP에서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동 내용은 근퇴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의무 적용되고,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2013년 7월 26일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표3 개정 근퇴법령에 따른 수수료 부담 주체

제도 유형	운영관리/자산관리수수료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DB/DC/기업형 IRP	사용자(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	사용자
개인형 IRP	가입자	가입자

* 개정 근퇴법령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며,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개정 내용의 의무 적용을 1년 유예
 **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도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는 운영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한 주체가 부담했음.
 자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수수료, 장기 운용 자산인 IRP 적립금 규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DB/DC/기업형 IRP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DB/DC/기업형 IRP의 경우 수수료가 가입자의 퇴직급여(적립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¹¹⁾ 반면, (개인형) IRP의 경우 수수료가 가입자의 묶인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동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 규모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IRP 가입자들, 수수료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2012년 7월 현재 IRP 사업자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연 0.35~0.8% 범위¹²⁾ 내에서 각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IRP 적립금과 같은 장기 운용 성격의 자산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가공할 만하다. 운용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고, 적립금(평잔 기준)의 1%(연)씩 매년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할 때 수수료가 없

11) 물론 DC/기업형 IRP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적립금에서 차감)하므로 적립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됨. 본고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은 의무 납입 사항인 반면 DC/기업형 IRP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은 선택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음.

12) 본고에서는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IRP 적립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한다면 사업자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여 언급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래 비용이 발생함.

을 때와 비교하여 10년 후 적립금은 10.3%, 20년 후 21.7%, 30년 후에는 무려 34.2%나 감소한다. 다시 말해 수수료가 없을 시 30년 후 적립금 규모가 100이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적립금의 1%(연)씩 30년 동안 매년 차감되면 30년 후 남아 있는 적립금 수준은 65.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IRP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가입자의 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이고, 연금자산은 그 성격상 장기로 운용하는 탓에 수수료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IRP 가입자는 수수료 수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4 수수료가 적립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수수료 차감 후 적립금 규모)

운용 기간 수수료율 (적립금 대비)	10년	20년	30년
연 0.35%	95.9	92.2	88.5
연 0.8%	91.6	82.8	73.2
연 1.0%	89.7	78.3	65.8

* 운용수익률 연 5%, 수수료 없이 운용되는 경우의 적립금 규모 100, 적립금 평잔에 대해 매년(기말) 1회 차감을 가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한국인의 퇴직전략!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